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 특례 확대>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265·제7266·7273·7274·7275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Ⅰ. 개요 ·····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 ····· 1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 3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273호) ····· 5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 7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 9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1

1.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 특례 확대 ····· 11

Ⅰ. 개요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재활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

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27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75호 노숙

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

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 특례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다섯 건의 개정안은 정신요양·재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재산에 대하여, 사망일에 관계없이 재산 규모가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간소화 특례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들은 이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민법」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간소화 특례 적용 대상을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에서 1,000만원 이하 잔여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서 신설>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전----------경우에도--------. 단,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8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서 신설>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전----------경우에도---------. 단,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7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서 신설>	법률 제1777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전----------경우에도---------.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서 신설>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전----------경우에도---------.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6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이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안 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45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나. 검토의견

□ 각 개정안의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각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① 「민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등을 거쳐서 상속인에게 지급 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참고자료),

②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하도록 하는 「민법」상 처리 절차에 대한 간소화 특례를 두고 있음.

< 간소화 특례에 관한 각 개정안의 현행법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 간소화 특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소액 잔여재산을 간소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민법」 규정의 미인지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정되었음.

- 간소화 특례 규정 마련 당시, 민법 규정 미인지 또는 법령 지식 부족 등으로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53%로 조사됨.

< 2024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현황 >

(단위: 명/천원)

구 분	조사대상			무연고사망자 유류금품 절차 이행여부							
	시설	무연고사망자	금액	민법				간소화절차		미이행*	
				처리중		완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09	708	6,157,664	271	6,786,625	256	4,020,197	112	398,574	61	477,676
장애인	84	295	2,403,722	108	1,289,609	112	900,637	49	126,406	26	87,068
노 인	86	187	2,618,868	86	1,764,289	58	785,054	35	53,665	8	15,557
노숙인	12	88	667,117	28	356,732	31	253,477	16	56,908	13	0
정신건강	27	138	1,353,999	49	627,488	58	536,019	12	25,511	19	164,979

* 유류품을 남기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의 사례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간소화 특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잔여재산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현금은 평균 758만원, 전체 30억 9,550만원으로, 이 중 10%가 미처리, 33%가 민법 절차 진행 중, 57%는 처리 완료 상태임.

< 2021년 6월 30일 이전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현황 >

금액(만원)	0~250	250~500	500~750	750~1,000	1,000이상
비율(%)	30	19	14	12	25

(단위:명/천원)

구 분	무연고 사망자수	금액	① 절차 미이행		② 절차 진행중		③ 처리완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08	3,095,509	41	117,431	136	1,078,714	231	1,899,364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들은 현재 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하여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간소화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속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잠재적 상속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당초 간소화 특례의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조사 결과 평균적인 장례비용이 15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약 300~350만원 소요됨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간소화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장례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들이 소급입법금지원칙[1]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과거에 개정된 법률의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과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이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부진정 소급입법[2]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민법」규정에 따르면 상속자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속자가 없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바,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들은 각기 다른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재산 간소화 특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만,

---

1)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도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 신뢰보호원칙에의 위배여부는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한 정도·신뢰손상정도·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2001.4.26.선고 99헌바55)

각 법률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간소화 특례는 ① 동일한 「민법」 상의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할 유류재산에 대하여, ② 동일한 한도액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의 제도로 보이고,

개정 취지 역시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취지라는 점에서,

사망일에 관계없이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려는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된 논리적 접근을 위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0년에 간소화 특례 규정을 신설할 당시에도 관련된 개정안을 연결지어 심사하여 의결하였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한도액의 인상은 신중 검토 필요, 개정법 시행('21.6.30.) 이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특례규정 소급 적용은 수용

- 한도액의 인상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인 재산 규모가 증가하므로 당초 기준금액 설정 취지를 고려할 때, 재산권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 필요, 간소화된 절차로 유류재산을 이미 처분한 이후에 상속권리 주장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재산 규모 증가에 따른 분쟁 소지 증가 우려가 있음.

-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의 어려움이 무연고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법 시행('21.6.30.)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도 간소화 특례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시설에서 장기간 보관 중인 유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처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을 소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법 등 개별법과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검토 필요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간소화 특례 적용 한도액의 상향 및 소급효의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효과성 증가 기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이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개정을 통해 시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절실히 필요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적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은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500만원 이하 소액 유류금품 간소화 특례 규정의 소급 적용에 찬성

□ (세종특별자치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간소화 확대로 상속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상속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소송 등 법적 분쟁 증가 우려.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부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개정안에 찬성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1	민법상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절차

처리주체	ⅰ)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ⅱ)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
	↓	↓
시설 또는 친족, 검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친족, 기타이해관계인(노인복지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민법 제1053조)	□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
	↓	
가정법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민법 제1053조)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고(3개월)	
	↓	↘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민법 제1056조)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월 이상)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 승인한 경우 ○ 상속인에게 지급(민법 제1055조) 및 종료
	↓	
(청구)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 가정법원	□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 2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	
	↓	
(청구) 시설 (특별 연고자) ↓ (재산분여) 가정법원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 ○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가정법원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민법 제1058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참고2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